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자살 예방 시설물 우선 설치〉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9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자살 예방 시설물 우선 설치	3

I. 개요

1.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9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안 제18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자살 예방 시설물 우선 설치

- 개정안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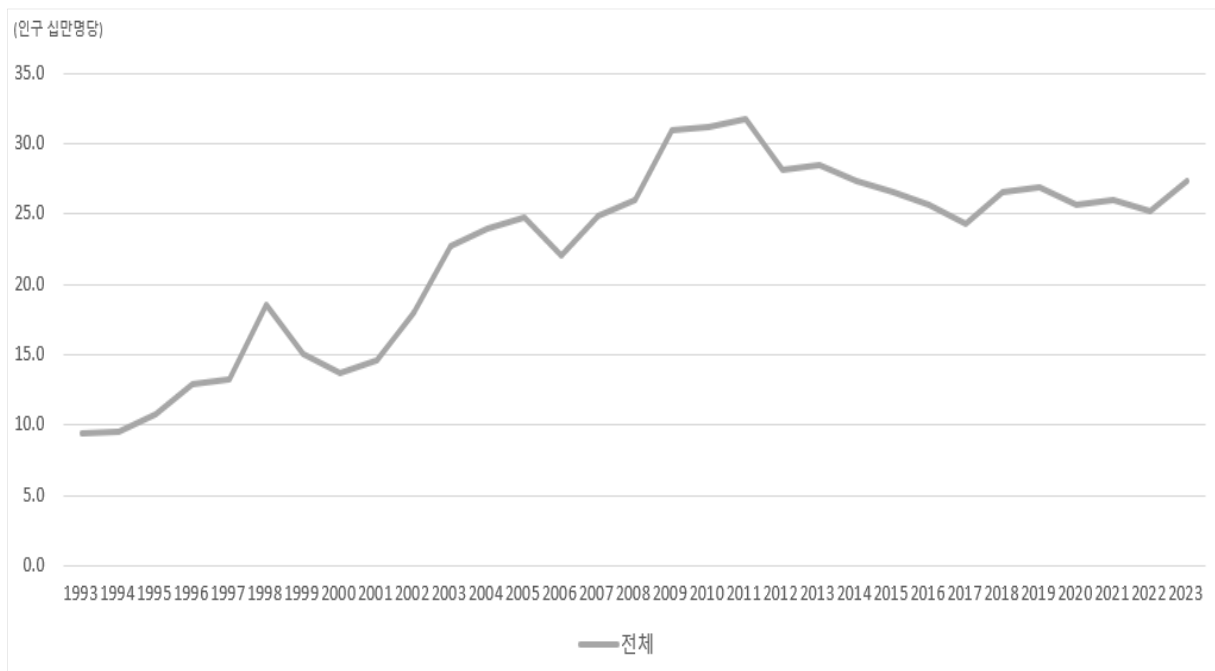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자살예방장소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살예방장소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장소의 지정, 시

설물의 설치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자살 예방 시설물 우선 설치에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데에서 취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 31.7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 기준 27.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자살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¹⁾)*100,000

□ 다만, 현행법령²⁾에서 이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법인³⁾에서도 서울의 마포대교 등 20개 교량에 75개의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운영중임.

□ 또한, 자살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시설·장소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자칫 자살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달리 자살고위험군 등의 사람에게는 충동적인 정보로서 자극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⁴⁾, 개정안에서 사용된 ‘자살예방장소’ 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한 장소에 대하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① 교량에는 센서를 장착한 안전펜스 설치 및

1)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말자료와 금년말자료의 산술평균을 의미함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용 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생명의전화

4) 실제로 2021년 7월 서해안의 어느 대형 교량에서 일어난 자살관련 보도가 있는 후, 같은 장소에서 3달 동안 6명이 투신한 사건에 대하여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바 있음.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② 아파트 및 고층 건물에는 옥상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며, ③ 숙박업소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자살예방용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음.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년~2027년)의 내용으로서 2022년 기준 25.2명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낮추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다(多)빈도 장소 관리강화를 위하여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자살 다빈도 장소 분석 후 그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는 매년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지정이 자살시도에 용이한 곳으로 오인될 위험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기획재정부	현행법에 이미 자살 예방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의무 조항이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적고, 해당 긴급전화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역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치 중이어서 이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498